



SHIN & KIM NEWSLETTER | Q&A

상세 Q&A 리스트

2026. 08.

상세 Q&A 리스트

Q 01 현재 검찰 단계에 있는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 A**
- 원칙적으로는 개정 법의 시행일(2026. 10. 2.)에 맞춰 경찰 송치 사건은 보완수사요구, 검사 직접 개시 사건은 이송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나, 공소청은 직접 보완이 허용된 기간인 2026. 12. 30.까지 최대한 직접 수사를 통해 기록을 보완한 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 송치 사건	검찰 수사개시 사건
원칙	보완수사요구	경찰, 중수청으로 이송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2항)
예외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 →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추가 수사 가능(2026. 12. 30.) (형소법 부칙 제12조)	좌동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3항)

상세 Q&A 리스트

Q 02 개정안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관련 규정은 어떤 사건부터 적용되나요.

- A**
- 보완수사요구는 개정법 시행일 전에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도 개정법상의 의무 이행 기한(1개월+1개월)과 미이행시 제재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재수사요구는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송치된 사건부터 개정법상의 여러 기한, 미이행시 제재 규정이 적용됩니다.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시행 시점	• 개정법 시행 이전에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 (형소법 부칙 제2조)	• 개정법 시행 이후에 기록이 송부된 사건부터 적용 (형소법 부칙 제8조)
주요 내용	• (검찰) 별도 요구 기한 없음 • (경찰) 1개월 내 요구 이행,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 지정 가능 (형소법 제197조의2)	• (검찰) 3개월 내 결정 원칙 • (경찰) 3개월 내 이행, 연장 불가 •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 지정 가능(적정한 재수사 기대 어려운 경우) (형소법 제245조의8)

상세 Q&A 리스트

Q 03 그렇다면 항고, 재항고, 및 재정신청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A** • 경찰, 중수청을 상대로 재기수사명령을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이고, 그 외의 제도 운영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항고	고등검찰청 검사장	광역공소청장
항고 기간	불기소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동일(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재항고	검찰총장	동일
재항고 기간	항고기각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동일(공소청법 제57조 제3항)
재기수사 명령시 수사기관	주로 검찰청	경찰 또는 중수청 (추후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확인 필요)
재정신청	대상: 검사의 불기소처분 판단주체: 관할 고등법원	대상: 동일 판단주체: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 ※ 고발사건 대상 범죄 확대

상세 Q&A 리스트



04 개정안 시행 전 검사작성 조서 등의 증거능력 및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기존 수사지휘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개정안 시행 전에 작성된 검사 조서 등의 증거능력과 개정안 시행 전에 이루어진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소시효 임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부칙에 규정된 기간(시행일부터 90일까지)중 작성된 검사 조서의 증거능력도 인정됩니다(형소법 부칙 제12조 제2항).

※ 특사경 지휘 관련 부칙 규정은 미존재(추후 하위법령 규정 가능)

상세 Q&A 리스트

Q 05 2026. 10. 2.경 바로 시행되지 않는 조문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 A**
- 제도의 시행을 위한 추가적인 인적·물적 인프라 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1년 후에 시행됩니다.
 - 압수수색 절차 전과정 의무 녹화 규정이 대표적입니다.

조문	주요 내용	시행일
제260조 제1항	재정신청 제기 범위 확대	공포 후 6개월 (2027. 2. 5.)
제197조의4	수사 경합 해소 절차	공포 후 6개월 (2027. 2. 5.)
제220조의2	압수수색 녹화 의무화	공포 후 1년 (2027. 8. 5.)
제244조의6	피의자신문 녹음	공포 후 1년 (2027. 8. 5.)

상세 Q&A 리스트

Q 06 하위법령(시행령·수사준칙·검찰사건사무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우리 회사 사건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 A** •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90일간 공소청이 직접 보완이 가능한 사건의 범위,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규정, 공소청과 특사경의 협력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 추이를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문	주요 내용	의미
공소청법 부칙제6조 형소법 부칙 제12조	• 검사가 예외적으로 90일 더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	•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의 처분 및 이송 시점 예측
형소법 제197조의4	•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 기업사건의 수사 주체 예측
형소법 제220조의2	• 압수수색 영상녹화 범위, 절차, 방식	• 추후 압수수색 대비, 현장 대응 전략 구체화
형소법 제245조의7	• 고발인 이의신청 범위	• 경영권 분쟁 사건 등에서 이의신청 가부에 따른 소송전략 수립
형소법 제245조의10	• 특별사법경찰관 협력에 관한 사항	• 노동, 공정거래, 금융, 환경 사건 초동 대응 관련
공소청법 제58조	• 항고, 재항고 관련 세부 절차	• 재기수사명령시 수사 주체, 변론 전략 등 예측

상세 Q&A 리스트

Q 07 하위법령은 어떤 것이 있고, 언제 어떻게 정비될 예정이며, 어디서 최신 동향을 확인할 수 있나요.

- A** • 형소법 시행일(10.2.)전까지 정비될 것으로 보이나, 최신 동향은 세종 형사그룹에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공지할 예정입니다.

종류	내용
대통령령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2. 공소청법 시행령(신설), 3.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설), 4.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관련 대통령령
법무부령	1. 검찰사건사무규칙 → 개편, 2.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 지휘 폐지에 따라 개편
대법원규칙	1. 형사소송규칙

상세 Q&A 리스트

Q 08 중수청이 담당할 '중대범죄'란 무엇이고, 기업 사건은 대부분이 중수청이 담당하는 것인가요.

- A** •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본시장법위반 사건과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이 대표적인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중대범죄'의 종류	죄명 예시
부패	뇌물, 직권남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등
경제	5억 원 이상 횡령, 배임, 공정거래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 등
방위사업	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사이버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기술유출방지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위반 등
내란, 외환 등	내란, 외환죄 등

구분	수사 주체(예상)
중대범죄 및 직접 관련성 있는 사건	중수청
노동 관계 법령 사건 (중대재해, 산안법)	특사경(노동청) 관할 (관세 사건도 동일)
금융, 조세, 공정거래, 식품의약, 환경 등 사건	일반경찰 및 특사경(지자체, 국세청, 식약처 등)도 수사 가능 다만,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중수청에 통보하여야 함
5억 미만 재산범죄 등 일반 형사 사건	경찰

상세 Q&A 리스트



09 우리 회사 사건을 경찰과 중수청이 동시에 수사할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중복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나요?



- 일단은 중복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중수청 수사범위 내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중수청에게 우선권을 주는 이첩제도(중수청법 제43조)와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중수청이 사건 내용 및 규모에 따라 경찰, 특별사법경찰, 공수처 중 한 곳에 이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공수처 수사범위 내의 범죄가 있다면 공수처에게 수사주체 결정권 부여(중수청법 제43조).

상세 Q&A 리스트

Q 10 경찰에서 수사중인 경제범죄가 중수청으로 이송될 수도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 수사과정에서 피해규모가 더 큰 것으로 밝혀지거나 중대범죄 죄명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송될 수 있습니다.

TIP

수사 주체가 경찰에서 중수청으로 바뀌면 추가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범위가 급격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규모·공모 범위·죄명의 종류 등이 확장될 수 있는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중수청 이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변호인을 통해 사건관계인의 진술 및 자료 관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수사 경합·이송이 문제될 경우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형소법 제197조의4)를 통한 관할 조정이 가능하므로, 변호인을 통해 관할 관련 의견을 적시에 개진하고, 새로운 수사기관에 맞춘 사전 준비 및 대응 논리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상세 Q&A 리스트

Q 11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도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A

-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전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 즉,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개시부터 종료시까지 전 과정을 녹화하게 되고, 그 영상자료가 수사기록에 편철되며, 전자시스템에도 의무적으로 등재됩니다(형소법 제220조의2).
- 또한, 피의자나 피압수자 등은 경찰 또는 검사를 상대로 해당 영상기록 열람, 복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규정은 2027.8.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TIP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의견제시가 영상기록에 그대로 남아 추후 변론 및 증거능력 다툼의 기초가 되므로,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현장 참여와 의견제시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집행 종료 후 영상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절차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위법 사유가 확인될 경우 준항고·증거능력 배제 변론 등 적극적인 대응 전략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 Q&A 리스트

12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한 공소청 단계 변론이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 검사는 구속의 필요성 심사를 위해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습니다(형소법 제201조 제7항). 검사의 피의자 면담시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의무화하였습니다(동조 제8항).

TIP

검찰이 직접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구속 여부를 더욱 신중히 판단할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청 단계 변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세 Q&A 리스트



13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구속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변호인이 수사 진행 상황을 모두 알기는 어렵지만,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이행하여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범죄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단계에서 구속 취소되거나 법원단계에서(전부 또는 일부) 무죄 선고받아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 Q&A 리스트

Q 14 특사경 사건에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한이 없어지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A

- 이제 특사경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입건 범위를 결정하거나 수사방향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건 송치 의무(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의무)는 유지되어 기소 의견뿐만 아니라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도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사후적 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기록을 송부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는 최대 2회에 한하여 재수사요구만 가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검사-특사경 관계	수사지휘 (구속력 있는 지시)	• 상호 협력관계 • 검사의 지도·조언 (형소법 제245조의10)
송치 방식	전건 송치	동일 (경찰과 달리 불송치 없음)
경찰 사건과의 차이	지휘에 따른 수사	① 기소의견 송치 사건 보완수사요구 가능 ② 불기소의견 송치 사건 보완수사요구 가능 (경찰에 대한 재수사요구와 달리 횡수 제한 없음)

TIP

지휘에서 지도·조언으로 바뀌더라도 모든 사건은 공소청으로 송치되기 때문에 여전히 검사는 사건의 종국적인 결정권을 가집니다.

송치전 노동 사건(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관), 공정거래 사건(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 자본시장 사건(금융감독원 특사경) 등 특사경 관할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입건·압수·송치 재량이 상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수사 초기 단계 대응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치후 송치 후에는 사건의 종국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통한 특사경 의견 변경 및 기소 여부 재검토 유도, 양형 변론을 통해 낮은 구형 유도 등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 Q&A 리스트



15 개정안 시행 후 검사는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직접 조사할 수 없나요.



- 검사가 종래와 같이 피의자·사건관계인을 직접 조사하여 조서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신설된 사실관계 확인 제도(제245조의13)등 아래 3가지 경로로 피의자·사건관계인, 고소인 등과 사건에 대한 면담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분	근거	내용
사실관계 확인	제245조의13	• 피의자·사건관계인의견 청취 가능 • 자료 제출 가능(변호인 조력권 보장)
고소인 등* 면담	제245조의13 제2항	• 고소인 등 면담 신청 가능 • 자료 제출 가능
구속영장 심사 면담	제201조 제7·8항	• 피의자 면담 가능 (변호인 조력권 보장)

*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TIP

담당 검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취득한 진술과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검사는 여전히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권을 가지므로, 변호인을 통한 의견서 제출 및 면담 신청은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세 Q&A 리스트



16 검사 면담시 제출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제245조의13),
검사를 면담할 실익이 있나요.



- 공소청 검사는 여전히 사건 기소·불기소 여부, 영장 청구·기각 여부 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을 가집니다.
- 따라서, 검사 면담시 제출한 자료의 증거능력과 무관하게 담당검사에 대한 의견 개진의 중요성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세 Q&A 리스트

Q 17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A**
- 보완수사요구는 수사기관의 이행 의무 기한을 1개월로 규정하였고, 공소청과 수사기관간의 '사건 핑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미이행시 통제 수단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 재수사요구도 수사기관의 미이행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등 공소청의 사법통제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보완수사요구	개정 전	개정 후
검사 요구 기한	없음	없음
경찰 이행 기한	지체없이 이행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체없이 이행하지 않을 수 있음)	1개월 (추가 1개월 연장 가능)
이행결과통보	단순 결과 통보	보완수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수사결과와 기록을 함께 송부
미이행시 통제 수단	직무배제·징계 요구	직무배제·징계 요구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 지정 요구

재수사요구	개정 전	개정 후
검사 요구 기한	없음	불송치 기록 송부일부터 3개월
경찰 처리 기한	없음	3개월
횟수 제한	총 2회 (최초 1회 + 추가 1회)	좌동
미이행시 제재	없음	직무배제·징계 요구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 지정 요구

TIP

고소·고발인 측은 비교적 짧은 이의신청 기한(3개월) 내에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신속히 정리 및 개선하거나 재수사요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세 Q&A 리스트

Q 18 경찰, 중수청의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A** • 기존에는 이의신청 기한도 없고, 고발인의 이의신청도 불가능하였지만, 개정법에서는 이의신청 기한을 3개월로 한정하였고, 일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인정하여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했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이의신청 기한	없음 (무기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고발인 이의신청	불가능	일부 가능: 고발인이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 (추후 대통령령 확인 필요)
신설 조문		①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형소법 제245조의13) ② 이의제기: 6개월 이상 수사 미진행, 고소인의 권리 침해 등 위법·부당한 수사(형소법 제245조의11)

TIP

경찰, 특사경, 중수청이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 공소청 검사에게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 지정 요구를 적극 요청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Q&A 리스트



19 수사기관이 바뀌거나 사건이 이첩되면 회사는 처음부터 다시 대응해야 하나요?



-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기존 수사기록과 증거는 함께 이전되므로 수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수사기관이 변경되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수사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첩 시점에 기존 진술 및 제출자료, 향후 대응전략 등을 재차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상세 Q&A 리스트



20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회사가 대응해야 할 상대방도 두 곳으로 늘어나는 것인가요?



- 그렇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중수청·특사경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설명하고, 송치 또는 불송치 후에는 공소청 검사를 상대로 기소 여부와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요구의 필요성 등을 설득해야 합니다.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el 02-316-4114 **Fax** 02-756-6226 **Email** shinkim@shinkim.com

www.shinkim.com